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노동보훈사회부 간의 행정약정

2021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이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이라 한다)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베트남의 노동보훈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약정에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항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항
연락 기관

1. 협정 제13조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사회보장공단이다.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2 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 3 항

가입증명서

1.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과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가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의무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가입증명서를 해당 근로자 및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3. 이 항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연락기관이 합의한 방법으로 연락기관 간 교환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항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시행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다음을 송부한다.

가. 접수일을 표시한 청구서

나. 청구인의 급여 수급자격 설정과 관련된 서류

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표시한 연락서식

2.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과 협정에 따라 이 항의 제1호에 언급된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가족에 관한 정보와 서류를 검증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그 뒤에 청구인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청구인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제 5 항 급여 지급

1. 양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각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그 한쪽 계약당사자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한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이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의 유효한 환율로 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6 항 행정 협조

1.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각 시행기간이 부담한다. 양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외 비용은 상환될 수 있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게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의료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자체 규칙에 따라 검진 또는 진단 수행에 관한 지침을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협력한다. 검진 또는 진단 비용은 요청하는 시행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4. 각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각자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망 또는 실종, 주소 및 혼인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제 7 항 통계 교환

양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의 제3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급여의 지급 총액에 대한 자료도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서식으로 제공된다.

제 8 항

발효 및 개정

1.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 이 행정약정은 양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행정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고 양쪽 계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항

분쟁 해결

이 행정약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쪽 계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협의와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제 10 항
추가 원칙

이 행정약정은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

2023년 12월 8일 세종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노동보훈사회부를 위하여